

상무센트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상황 해제시 까지)**
 - . 상무센트럴자이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청약 및 사전검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 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속한 경우
 -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측정)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 . 당사가 안내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26.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26.)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5.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 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xi.co.kr/sc)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유족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06월 05일(월)	06월 07일(수)	06월 08일(목)	06월 14일(수)	06월 15일(목) ~ 06월 21일(수)	06월 26일(월) ~ 06월 28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건물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물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발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인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인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인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과-14759호(2023.05.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0층 14개동 총 903세대,
일반공급 621세대와 특별공급 282세대[일반(기관추천) 44세대, 다자녀가구 91세대, 신혼부부 79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195	01	084.9700A	84A	84.9700	20.8964	105.8664	51.8360	157.7024	51.4620	200	20	20	36	6	18	100	100	6
		02	084.9900B	84B	84.9900	20.8597	105.8497	51.8481	157.6978	51.4741	50	5	5	9	2	5	26	24	3
		03	084.9700C	84C	84.9700	22.2064	107.1764	51.8360	159.0124	51.4620	178	18	18	32	5	16	89	89	6
		04	084.9600D	84D	84.9600	21.5747	106.5347	51.8299	158.3646	51.4559	10	1	1	2	1	1	6	4	1
		05	125.2600A	125A	125.2600	29.3157	154.5757	76.4150	230.9907	75.8636	131	-	14	-	4	-	18	113	5
		06	125.4000B	125B	125.4000	29.2689	154.6689	76.5004	231.1693	75.9484	178	-	18	-	4	-	22	156	6
		07	125.1300C	125C	125.1300	29.3141	154.4441	76.3356	230.7797	75.7849	17	-	2	-	1	-	3	14	1
		08	150.7500A	150A	150.7500	35.1914	185.9414	91.9652	277.9066	91.3016	46	-	4	-	2	-	6	40	2
		09	150.6100B	150B	150.6100	35.0382	185.6482	91.8798	277.5280	91.2168	8	-	1	-	1	-	2	6	1
		10	157.3300T	157T	157.3300	38.8023	196.1323	95.9794	292.1117	95.2868	7	-	1	-	-	-	1	6	-
		11	185.1600	185	185.1600	41.2660	226.4260	112.9571	339.3831	112.1420	42	-	4	-	1	-	5	37	2
		12	205.3300	205	205.3300	44.5198	249.8498	125.2618	375.1116	124.3580	30	-	3	-	1	-	4	26	2
		13	220.3800T	220T	220.3800	53.0948	273.4748	134.4432	407.9180	133.4730	4	-	-	-	-	-	0	4	-
		14	247.8000T	247T	247.8000	60.0605	307.8605	151.1708	459.0313	150.0799	2	-	-	-	-	-	0	2	-
합 계											903	44	91	79	28	40	282	621	35

-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단위세대 개요에 기재된 면적기준으로 소수점이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2023.07.26	2023.10.02	2023.12.01	2024.02.01	2024.06.03	
84A	200	103동 (1,2,3,4호) 105동 (2,3,4호) 107동 (1,2,3호) 109동 (1,2,3호)	1층 (105동 2,3,4호)	3	437,666,144	490,333,856		928,000,000	30,000,000	62,8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278,400,000
			1층	2	398,049,812	445,950,188		844,000,000	30,000,000	54,4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253,200,000
			2층	13	407,953,895	457,046,105		865,000,000	30,000,000	56,500,000	129,750,000	129,750,000	129,750,000	129,750,000	259,500,000
			3층	13	417,857,978	468,142,022		886,000,000	30,000,000	58,600,000	132,900,000	132,900,000	132,900,000	132,900,000	265,800,000
			4층	13	423,989,077	475,010,923		899,000,000	30,000,000	59,90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269,700,000
			5층	13	430,120,176	481,879,824		912,000,000	30,000,000	61,2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273,600,000
			6-18층	143	437,666,144	490,333,856		928,000,000	30,000,000	62,8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278,400,000
84B	50	105동 (1호) 107동 (4호) 109동 (4호)	1층 (105동 1호)	1	423,989,077	475,010,923		899,000,000	30,000,000	59,90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269,700,000
			1층	2	386,259,237	432,740,763		819,000,000	30,000,000	51,90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245,700,000
			2층	3	396,163,320	443,836,680		840,000,000	30,000,000	54,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252,000,000
			3층	3	406,067,403	454,932,597		861,000,000	30,000,000	56,10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258,300,000
			4층	3	411,726,879	461,273,121		873,000,000	30,000,000	57,300,000	130,950,000	130,950,000	130,950,000	130,950,000	261,900,000
			5층	3	417,386,355	467,613,645		885,000,000	30,000,000	58,50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265,500,000
			6-18층	35	423,989,077	475,010,923		899,000,000	30,000,000	59,90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269,700,000
84C	178	106동 (1,4호) 108동 (1,4호) 110동 (1,4호)	1층	6	390,503,844	437,496,156		828,000,000	30,000,000	52,8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248,400,000
			2층	6	400,407,927	448,592,073		849,000,000	30,000,000	54,900,000	127,350,000	127,350,000	127,350,000	127,350,000	254,700,000
			3층	6	410,312,010	459,687,990		870,000,000	30,000,000	57,0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261,000,000
			4층	6	416,443,109	466,556,891		883,000,000	30,000,000	58,300,000	132,450,000	132,450,000	132,450,000	132,450,000	264,900,000
			5층	6	422,574,208	473,425,792		896,000,000	30,000,000	59,600,000	134,400,000	134,400,000	134,400,000	134,400,000	268,800,000
			6-20층	90	431,063,422	482,936,578		914,000,000	30,000,000	61,4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274,200,000
			21-30층	58	438,137,767	490,862,233		929,000,000	30,000,000	62,90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278,700,000
84D	10	112동 (3호)	1층	1	386,259,237	432,740,763		819,000,000	30,000,000	51,90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245,700,000
			2층	1	396,163,320	443,836,680		840,000,000	30,000,000	54,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252,000,000
			3층	1	406,067,403	454,932,597		861,000,000	30,000,000	56,10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258,300,000
			4층	1	411,726,879	461,273,121		873,000,000	30,000,000	57,300,000	130,950,000	130,950,000	130,950,000	130,950,000	261,900,000
			5층	1	417,386,355	467,613,645		885,000,000	30,000,000	58,50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265,500,000
			6-10층	5	423,989,077	475,010,923		899,000,000	30,000,000	59,90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134,850,000	269,700,000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2023.07.26	2023.10.02	2023.12.01	2024.02.01	2024.06.03	
125A	131	101동 (2,3,4호) 102동 (1,2,3,4호) 104동 (1,2호)	1층 (104동 1,2호)	2	679,994,172	761,823,480	76,182,348	1,518,000,000	50,000,000	101,800,000	227,700,000	227,700,000	227,700,000	227,700,000	455,400,000
			2층	9	638,782,404	715,652,360	71,565,236	1,426,000,000	50,000,000	92,600,000	213,900,000	213,900,000	213,900,000	213,900,000	427,800,000
			3층	9	652,668,978	731,210,020	73,121,002	1,457,000,000	50,000,000	95,700,000	218,550,000	218,550,000	218,550,000	218,550,000	437,100,000
			4층	9	660,732,150	740,243,500	74,024,350	1,475,000,000	50,000,000	97,500,000	221,250,000	221,250,000	221,250,000	221,250,000	442,500,000
			5층	9	668,795,322	749,276,980	74,927,698	1,493,000,000	50,000,000	99,300,000	223,950,000	223,950,000	223,950,000	223,950,000	447,900,000
			6-18층	93	679,994,172	761,823,480	76,182,348	1,518,000,000	50,000,000	101,800,000	227,700,000	227,700,000	227,700,000	227,700,000	455,400,000
125B	178	106동 (2,3호) 108동 (2,3호) 110동 (2,3호)	1층	6	614,592,888	688,551,920	68,855,192	1,372,000,000	50,000,000	87,200,000	205,800,000	205,800,000	205,800,000	205,800,000	411,600,000
			2층	6	628,031,508	703,607,720	70,360,772	1,402,000,000	50,000,000	90,200,000	210,300,000	210,300,000	210,300,000	210,300,000	420,600,000
			3층	6	641,918,082	719,165,380	71,916,538	1,433,000,000	50,000,000	93,300,000	214,950,000	214,950,000	214,950,000	214,950,000	429,900,000
			4층	6	649,981,254	728,198,860	72,819,886	1,451,000,000	50,000,000	95,100,000	217,650,000	217,650,000	217,650,000	217,650,000	435,300,000
			5층	6	658,492,380	737,734,200	73,773,420	1,470,000,000	50,000,000	97,000,000	220,500,000	220,500,000	220,500,000	220,500,000	441,000,000
			6-20층	90	669,243,276	749,778,840	74,977,884	1,494,000,000	50,000,000	99,400,000	224,100,000	224,100,000	224,100,000	224,100,000	448,200,000
			21-30층	58	680,442,126	762,325,340	76,232,534	1,519,000,000	50,000,000	101,900,000	227,850,000	227,850,000	227,850,000	227,850,000	455,700,000
125C	17	101동 (1호)	2층	1	623,104,014	698,087,260	69,808,726	1,391,000,000	50,000,000	89,100,000	208,650,000	208,650,000	208,650,000	208,650,000	417,300,000
			3층	1	636,990,588	713,644,920	71,364,492	1,422,000,000	50,000,000	92,200,000	213,300,000	213,300,000	213,300,000	213,300,000	426,600,000
			4층	1	645,053,760	722,678,400	72,267,840	1,440,000,000	50,000,000	94,000,000	216,000,000	216,000,000	216,000,000	216,000,000	432,000,000
			5층	1	653,116,932	731,711,880	73,171,188	1,458,000,000	50,000,000	95,8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437,400,000
			6-18층	13	664,315,782	744,258,380	74,425,838	1,483,000,000	50,000,000	98,300,000	222,450,000	222,450,000	222,450,000	222,450,000	444,900,000
150A	46	112동 (1,2호) 113동 (1,2호)	1층	2	753,010,674	843,626,660	84,362,666	1,681,000,000	84,050,000	84,050,000	252,150,000	252,150,000	252,150,000	252,150,000	504,300,000
			2층	4	769,584,972	862,195,480	86,219,548	1,718,000,000	85,900,000	85,900,000	257,700,000	257,700,000	257,700,000	257,700,000	515,400,000
			3층	4	785,711,316	880,262,440	88,026,244	1,754,000,000	87,700,000	87,700,000	263,100,000	263,100,000	263,100,000	263,100,000	526,200,000
			4층	4	795,566,304	891,303,360	89,130,336	1,776,000,000	88,800,000	88,800,000	266,400,000	266,400,000	266,400,000	266,400,000	532,800,000
			5층	4	805,421,292	902,344,280	90,234,428	1,798,0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269,700,000	269,700,000	269,700,000	539,400,000
			6-13층	28	818,859,912	917,400,080	91,740,008	1,828,000,000	91,400,000	91,400,000	274,200,000	274,200,000	274,200,000	274,200,000	274,200,000
150B	8	113동 (3호)	3층	1	771,376,788	864,202,920	86,420,292	1,722,000,000	86,100,000	86,100,000	258,300,000	258,300,000	258,300,000	258,300,000	516,600,000
			4층	1	781,231,776	875,243,840	87,524,384	1,744,0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261,600,000	261,600,000	261,600,000	523,200,000
			5층	1	791,086,764	886,284,760	88,628,476	1,766,000,000	88,300,000	88,30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529,800,000
			6-10층	5	804,077,430	900,838,700	90,083,870	1,795,000,000	89,750,000	89,750,000	269,250,000	269,250,000	269,250,000	269,250,000	538,500,000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2023.07.26	2023.10.02	2023.12.01	2024.02.01	2024.06.03	
157T	7	103동 (1,2,3,4호) 107동 (1,2,3호)	1층	7	735,092,514	823,552,260	82,355,226	1,641,000,000	82,050,000	82,050,000	246,150,000	246,150,000	246,150,000	246,150,000	492,300,000
185	42	111동 (1,2호)	1층	2	965,788,824	1,082,010,160	108,201,016	2,156,000,000	107,800,000	107,800,000	323,400,000	323,400,000	323,400,000	323,400,000	646,800,000
			2층	2	985,946,754	1,104,593,860	110,459,386	2,201,000,000	110,050,000	110,050,000	330,150,000	330,150,000	330,150,000	330,150,000	660,300,000
			3층	2	1,006,104,684	1,127,177,560	112,717,756	2,246,000,000	112,300,000	112,300,000	336,900,000	336,900,000	336,900,000	336,900,000	673,800,000
			4층	2	1,017,751,488	1,140,225,920	114,022,592	2,272,000,000	113,600,000	113,600,000	340,800,000	340,800,000	340,800,000	340,800,000	681,600,000
			5층	2	1,029,846,246	1,153,776,140	115,377,614	2,299,000,000	114,950,000	114,950,000	344,850,000	344,850,000	344,850,000	344,850,000	689,700,000
			6-21층	32	1,045,972,590	1,171,843,100	117,184,310	2,335,000,000	116,750,000	116,750,000	350,250,000	350,250,000	350,250,000	350,250,000	700,500,000
205	30	114동 (1,2호)	1층	2	1,127,500,218	1,263,181,620	126,318,162	2,517,000,000	125,850,000	125,850,000	377,550,000	377,550,000	377,550,000	377,550,000	755,100,000
			2층	2	1,149,897,918	1,288,274,620	128,827,462	2,567,000,000	128,350,000	128,350,000	385,050,000	385,050,000	385,050,000	385,050,000	770,100,000
			3층	2	1,171,847,664	1,312,865,760	131,286,576	2,616,000,000	130,800,000	130,800,000	392,400,000	392,400,000	392,400,000	392,400,000	784,800,000
			4층	2	1,184,838,330	1,327,419,700	132,741,970	2,645,000,000	132,250,000	132,250,000	396,750,000	396,750,000	396,750,000	396,750,000	793,500,000
			5층	2	1,198,276,950	1,342,475,500	134,247,550	2,675,000,000	133,750,000	133,750,000	401,250,000	401,250,000	401,250,000	401,250,000	802,500,000
			6-14층	18	1,215,747,156	1,362,048,040	136,204,804	2,714,000,000	135,700,000	135,700,000	407,100,000	407,100,000	407,100,000	407,100,000	814,200,000
			15층	2	1,343,862,000	1,505,580,000	150,558,000	3,000,000,000	150,000,000	150,000,000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900,000,000
220T	4	102동 (1,2,3,4호)	1층	4	1,160,200,860	1,299,817,400	129,981,740	2,590,000,000	129,500,000	129,500,000	388,500,000	388,500,000	388,500,000	388,500,000	777,000,000
247T	2	112동 (1,2호)	1층	2	1,307,129,772	1,464,427,480	146,442,748	2,918,000,000	145,900,000	145,900,000	437,700,000	437,700,000	437,700,000	437,700,000	875,4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700A	084.9900B	084.9700C	084.9600D	125.2600A	125.4000B	125.1300C	150.7500A	150.6100B	157.3300T	185.1600	205.3300	220.3800T	247.8000T
건본주택 등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위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은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추가선택 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대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소정의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계약자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기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중도금대출 이자 정산 평균 연리가 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종합저축 통장(청약예.부금 포함)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4	1	-	-	-	-	-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4	-	-	-	-	-	-	-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4	-	-	-	-	-	-	-	-	-	9
	중소기업 근로자	4	1	3	-	-	-	-	-	-	-	-	-	8
	장애인	4	1	3	-	-	-	-	-	-	-	-	-	8
	소계	20	5	18	1	-	-	-	-	-	-	-	-	4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	5	18	1	14	18	2	4	1	1	4	3	91
신혼부부 특별공급	36	9	32	2	-	-	-	-	-	-	-	-	7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2	5	1	4	4	1	2	1	-	1	1	28
생애최초 특별공급	18	5	16	1	-	-	-	-	-	-	-	-	40
합 계	100	26	89	6	18	22	3	6	2	1	5	4	28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기타 광역시)	전라남도(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년 05월 26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년)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고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일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하므로 본 아파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년 05월 26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축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축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6.0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건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일반공급	1순위	2023.06.07(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3.06.08(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등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등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자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자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특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06.14.(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6.26.(월)~2023.06.28.(수)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6.14. ~ 2023.06.23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6.14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자격서류제출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기간	2023.06.15.(목) ~ 2023.06.21.(수) 7일간 / 10:00~17:00
제출방법	건본주택 방문접수
제출장소	건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 공통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표1.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	-----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금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세무서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 (추정세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인증서류

해당자적	자산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서류미 시 접수 불가)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신청당일 건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람.
-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은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적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 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Ⅶ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6.26.(월) ~ 2023.06.28.(수) 3일간 10:00~16:00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마락동 162-85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증증서류	-	• 당첨자 자격증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증빙서(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본인	• 예 : 예금잔액증명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감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하나은행	172-910020-09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동·호수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이상울선) Ⅰ,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 모계좌로서, 2차 계약금부터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에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분양대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1차 계약금 납부 시 1차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홀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011001홀길동” 기재, 동 뒤 2자리 + 호 4자리 + 성명)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연체료 포함)은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기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자는 입주시(잔금 납부시)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총액을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시 소정의 연체료가 발생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기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중도금대출 이자 정산 평균 연리가 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내용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드리며,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행위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시행위탁자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유상옵션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시행위탁자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시행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입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입주 개시 45일 전까지 실시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통보합니다.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5년 0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 중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공사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주 시 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손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복지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영화관(CGV), 카페테리아 등),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Ⅷ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84 A/B/C/D	125 A/B/C	150 A/B	157T	185	205	220T	247T
발코니 확장 금액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2) 발코니 확장 공사관련 유의사항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변경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IX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유상옵션 1

1) 마감 UP-grade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복도 및 벽마감 : 84타입 • 기본 : 도배 • 유상옵션 : 시트판넬 + 유럽산타일(현관,복도,거실 창호 주변) <input type="checkbox"/> 주방상판 : 84타입 • 기본 : 엔지니어드스톤 • 유상옵션 : 세라믹상판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3,900,000	3,200,000	4,100,000	3,700,000	•	•	•	•	•	•	•	•	•	•	•

2) 조명 UP-grade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조명 특화 : 185타입, 205타입 제외 전타입 • 기본 : 거실, 복도 아트월 단천장 및 리니어 조명(전타입),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84타입 간접조명 2면, 기타타입 4면) • 유상옵선 84타입 : 거실 건축화조명, 침실/주방 특화등, 주방 간접조명 4면, 루버천장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거실 건축화 조명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4,900,000	4,500,000	4,900,000	4,500,000	2,300,000	2,100,000	2,100,000	4,200,000	2,700,000	1,800,000	•	•	2,300,000	4,100,000

3) 욕실 UP-grade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타일 및 도기류 : 84타입 • 기본 : 국산 타일 및 도기 • 유상옵선 : 유럽산 타일 벽/바닥 마감,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기/양변기, 욕실 특화등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	•	•	•	•	•	•	•	•	•

4) 바닥재

① 침실 + 거실/주방/복도 : 전체 원목마루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바닥재(침실 + 거실/주방/복도) : 전타입 • 기본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전체 국산 강마루 - 185타입 : 침실(원목마루_동화) + 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_동화) - 205타입 : 침실(원목마루_조르다노) + 거실/주방/복도(포세린 타일) ※ 205타입 15층 전체 기본제공 • 유상옵선 : 침실(원목마루_조르다노) + 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_조르다노)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22,700,000	21,600,000	24,300,000	23,200,000	32,400,000	31,100,000	31,400,000	40,000,000	39,800,000	42,600,000	30,800,000	22,800,000	56,800,000	68,000,000

② 침실 : 원목마루,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바닥재(침실 + 거실/주방/복도) : 205타입 제외 전타입 • 기본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전체 국산 강마루 - 185타입 : 전체 원목마루_동화 • 유상옵선 : 침실(원목마루_조르다노) + 거실/주방/복도(포세린타일)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12,800,000	12,000,000	13,900,000	13,400,000	18,300,000	18,300,000	18,500,000	22,900,000	22,200,000	23,200,000	10,000,000	•	30,200,000	36,400,000

③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바닥재(거실/주방/복도) : 205타입 제외 전타입 • 기본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전체 국산 강마루 - 185타입 : 전체 원목 마루_동화 • 유상옵션 : 거실/주방/복도(포세린타일)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2,300,000	2,200,000	2,400,000	2,300,000	3,300,000	3,000,000	3,000,000	4,000,000	4,100,000	4,500,000	무상	•	6,200,000	7,300,000

5) 현관 중문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현관 중문 : 84타입 • 기본 : 수동 중문 • 유상옵션 : 자동 중문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	•	•	•	•	•	•	•

6) 드레스룸 선반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드레스룸 선반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기본 : 일반 선반 • 유상옵션 : 벽판넬 선반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1,400,000	1,200,000	1,200,000	1,700,000	1,700,000	1,400,000	1,400,000	1,900,000	1,700,000	1,400,000	•	•	1,700,000	1,900,000

7) 불박이장_침실2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불박이장_침실2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기본 : 없음 • 유상옵션 : 침실2 불박이장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200,000	1,200,000	1,300,000	1,300,000	1,000,000	•	•	1,300,000	1,300,000

8) 불박이장_침실3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불박이장_침실3 : 84타입, 125타입, 150타입, T타입 ※ 84D타입 제외 • 기본 : 없음 • 유상옵션 : 침실3 불박이장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1,200,000	1,200,000	1,200,000	•	1,300,000	1,000,000	1,000,000	1,400,000	1,300,000	1,200,000	•	•	1,300,000	1,400,000

■ 추가 유상옵션 I 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유상옵션 I	계약금(10%)	신한은행	100-034-233157	지에스건설(주)
	중도금(10%)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잔금(80%)			

- 분양대금 및 추가 유상옵션 II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추가 유상옵션 I (마감,조명,욕실,바닥재, 주방상판, 중문,드레스룸,볼락이장)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분양대금” 및 “추가 유상옵션 II” 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유상옵션 I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이후 발생하는 옵션대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011201홍길동” 기재, 동 뒤 2자리 + 호 4자리 + 성명)
-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 II

1) 주방가구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주방가구 : 150타입, 185타입, 247T타입(2층) • 기본 : 라이히트 • 유상옵션 : 지메틱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	•	•	•	•	•	•	65,000,000	65,000,000	•	70,000,000	•	•	65,000,000

2) 독립형 주방후드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독립형 주방후드 : 84타입 • 기본 : 하츠 • 유상옵션 : 독립형 주방후드(팔맥)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	•	•	•	•	•	•	•	•	•

3) 빌트인 냉장/냉동고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빌트인 냉장/냉동고 : 125타입, 150타입, 185타입, T타입 • 기본 : 없음 • 유상옵션 : 빌트인 냉장/냉동고(밀레)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	•	•	•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	25,000,000	25,000,000

4) 빌트인 와인셀러

설 치 내 역			<input type="checkbox"/> 빌트인 와인셀러 : 185타입, 205타입 • 기본 : 없음, ※ 205타입 15층 기본제공 • 유상옵션 : 빌트인 와인셀러(일례)											
구 분	84A	84B	84C	84D	125A	125B	125C	150A	150B	157T	185	205	220T	247T
금 액(원)	•	•	•	•	•	•	•	•	•	•	16,000,000	16,000,000	•	•

■ 추가 유상옵션 II 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유상옵션 II	계약금(10%)	하나은행	717-910023-75804	(주)하나자산신탁
	중도금(10%)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잔금(80%)			

• 분양대금 및 추가 유상옵션 I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추가 유상옵션 II(주방가구, 주방후드, 빌트인 냉장/냉동고, 빌트인 와인셀러)는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시행위탁자인 (주)에스시아시아가 시공 예정으로 “분양대금” 및 “추가 유상 옵션 I” 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유상옵션 II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이후 발생하는 옵션대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011201홍길동” 기재, 동 뒤 2자리 + 호 4자리 + 성명)
-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유상옵션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유상옵션품목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 별도 확인바람.
- 유상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유상옵션품목은 시공 상의 문제로 유상옵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주택의 잔금납부 시 유상옵션대금도 완납되어야 입주 열쇠 불출이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품목 선택 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옵션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 유의사항

일반사항	<p>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p>
	<p>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p>
	<p>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인·허가	<p>공사 중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공사일정이 지연 될 경우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손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p>
	<p>각종홍보물은 2023년 5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p>
	<p>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경로당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초 사업계획승인이 2021년 7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공통	<p>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남측에는 상무대로 및 주차장, 동측에는 상무대로911번길, 서측에는 상무민주로, 북측에는 상무오월로가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현황</p>
	<p>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추후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경계선, 포장레벨, 지반경사도, 옹벽 및 조경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p>
	<p>본 단지는 주변의 항공기 소음 및 상무고등학교, 주차장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학교	<p>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면적 증감, 도로, 보호수 이식 여부, 공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합니다.</p>
	<p>114동 전면의 정원형 어린이놀이터와 후면의 주민운동시설은 향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합니다.</p>
	<p>초등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seobu.gen.go.kr/), 중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단지	동별 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11동 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외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상구조물의 경관조명 설치로 옥상에 인접한 상층부 세대에 빛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주 설치로 인해 저층 세대 일부는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8동의 최상층에는 CLUB CLOUD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CLUB CLOUD 내부 조명 및 외부경관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의 동측, 107동의 남측에는 공원이 위치하며, 111동의 북측에는 무지개공원이 위치하여 인접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옥상, 111동 옥탑, 113동, 114동의 옥상에는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엘리오스)이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삭제되거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106동, 108동, 110동의 옥상에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됩니다.
		106동 배면은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102동 및 경로당~어린이집 사이, 놀이터 등 휴게형 파고라가 설치되는 인접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지상 출입구와 인접한 108동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인접한 107동, 108동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105동, 107동, 109동 1층 세대는 하부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난간벽 높이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동 출입구는 쓰레기 보관소와 인접해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및 배치도 상의 위치를 확인 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 세대 캐노피의 치수, 마감재, 색상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구조 보강 등을 위한 기둥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6동 4호라인 84C㎡ 타입과 102동 1호라인 125A㎡ 타입, 108동 1호라인 84C㎡ 타입과 109동 4호라인 84B㎡ 타입, 110동 4호라인 84C㎡ 타입과 111동 1호라인 185㎡ 타입은 창문을 통한 시선 간섭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9동 1호라인 저층 세대는 문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 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 건축마감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와 학교 시설이 인접하여 안전상 경계부에 휀스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벽,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리침,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엘리오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 또는 돌출(노출)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설치예정위치:101동,103동,105동,106동,108동,110동,113동옥상층및102동,108동,110동지하3층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대응도실의 천정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상 레벨 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3동과 114동 사이의 어린이놀이터는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지 않고, 단위놀이시설물로 만들어진 정원형 어린이놀이터 입니다.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3조(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로서 입주자 등이 임의로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야 합니다.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세대는 통행자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인근에는 스쿨버스 존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 입주자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p>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 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106동, 108동, 110동 외벽 일부에 유리마감재(커튼블록)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관 조명은 빔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출입구의 형태는 모형, CG와 달리 특화설계시공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출입구 쪽에 접한 일부 1층 세대에는 조망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주변 주택의 일조장에 저감을 위하여 101동 옥상 2대, 113동 옥상 5대, 114동 옥상 10대, 111동 옥탑 9대 등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엘리오스)이 설치되며, 사업주체가 ㈜엔엘에스와 30년간 유지관리(정기점검, 운영 전기세, 수리 및 유지보수비 등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이관하며, 엘리오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30년간) 등은 ㈜엔엘에스가 산정하여 입주 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일괄예치 하는 것에 계약자(입주자)는 일체의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p>
공용시설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p>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골조 사이즈 및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아트리움 라운지, 골프연습장, 사우나, CGV SALON,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부속동(아너스클럽) 및 공용부 일부 구간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 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층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 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CLUB CLOUD는 108동에 있는 CLUB CLOUD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인접한 동 및 세대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CLUB CLOUD 내부조명 및 외부 경관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CLUB CLOUD 테라스 공간 일부에 하부 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급탕을 위한 연료전지용 연도가 1층 외부 DA에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연기, 열기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사우나용 연도가 108동 엘리베이터 전실 파이프 샤프트를 통하여 옥상층까지 연결되며, 옥탑층 상부로 연도가 인출되어 주변 등에 미관 저해 및 반짝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p>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과 구조물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공용설비 및시스템	<p>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에 조정 침출수가 연결되어,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105동 측면, 107동 전면에 인접하여 정압기(정압시설) 및 상수도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열선 유지 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로 1개소를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p>
	<p>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 CLUB CLOUD(SPC OCS), 아트리움 라운지(자이S&D) 서비스 및 자이안비, 자이 멤버십 등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습니다.</p> <p>입주민 부대복리시설인 CLUB CLOUD(SPC OCS), 아트리움 라운지(자이S&D) 서비스는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민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자께서는 계약 시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p> <p>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 CLUB CLOUD(SPC OCS), 아트리움 라운지(자이S&D), CGV SALON, 독서실 등 일부 시설은 이용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위탁관리업체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 비용 발생 및 개별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은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되며, 입주민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CLUB CLOUD는 입주민 스스로 커피를 추출하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으로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커피머신, 장비 및 인테리어 집기류는 제공되며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운영 시간 및 방식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은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p> <p>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습니다.</p> <p>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은 도서가 제공되며,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1년 500권씩, 2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559대, 근린생활시설 44대, 총 1,603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주차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3대, 완속 13대, 콘센트형 충전기 389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및 부출입구1을 통해 진입하는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p> <p>부출입구2를 통해 진입하는 지하 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소형 택배차는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1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해야 합니다.</p> <p>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2의 경우 아파트와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합니다.</p> <p>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는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지하1층 주차장에는 각 동별 1개소의 건식 차량청소기가 설치되며, 공기충전을 위한 콤프레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식 차량청소기의 위치는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근린생활 시설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104동, 105동, 109동 인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2의 경우 아파트와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 동선이 겹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3, #4 지분의 입면 높이는 추후 난간 설치로 인하여 낮아질 예정이니 상가 계약자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단위 세대	평면	<p>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단, 185㎡, 205㎡ 타입은 2,500mm, 157㎡T, 220㎡T, 247㎡T 타입은 상층 2,400mm, 하층 2,700mm)</p> <p>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현장 여건에 따라 노출될 수 있으며, 배치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실외기실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외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침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종 인채물(카탈로그 등)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한지, 레일 등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발코니	<p>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흡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흡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p> <p>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205㎡ 타입의 개방형 발코니에는 콘센트함이 설치됨)</p> <p>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창호	<p>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거실 및 안방 발코니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창(별도의 철제 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유리 난간이 적용된 외부 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 난간의 파손 우려 및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p> <p>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옥외공간	<p>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 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옥외공간은 해당 세대에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으로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p> <p>옥외공간 바닥의 기본마감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p> <p>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p> <p>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옥외공간에 세대간 볼투시형 칸막이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볼투시형 칸막이 등의 크기, 위치, 재료,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 동 옥상에는 옥상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세대 조망 및 일조환경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개방형 발코니 (205㎡타입)	<p>개방형 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개방형 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개방형 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개방형 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 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p> <p>개방형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p> <p>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현관 자동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 타입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자동중문 설치 시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벽패널형 시스템선반은 최대 적재하중이 30Kg으로 향후 입주 후 물건 적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5㎡, 205㎡ 타입 제외)
	일부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마감, 조명, 욕실 UP-grade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4㎡C 타입은 3면 유리창 설치로 인하여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원목마루의 특성상 용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목창호, 시트 패널, 타일 등)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구인 지메텍, 빌트인 밀레 주방가전(냉장고/냉동고, 와인셀러,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인덕션), 팔맥 독립형 주방 후드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일반형(벽걸이형, 스탠드형)은 사용이 불가하며,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압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주방TV폰)은 거리, 음성엔진 인식범위, 주변소음, 전파방해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하이라이트 등 전기 쿡탑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 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185㎡, 205㎡ 타입에 설치되는 주방후드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일부 대형 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	

	<p>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p> <p>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85㎡ 타입은 침실4 인접한 펜트리에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공간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배관 유수음 및 구동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205㎡ 타입은 현관창고에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공간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배관 유수음 및 구동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108동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샤프트) 내부에 부대시설 연도가 설치됩니다.</p> <p>발코니에 배수를 위한 입상배관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p> <p>CLUB CLOUD에는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시경 점검으로 인해 묶음 배관은 불가합니다.</p> <p>복층형 세대는 조명, 온도제어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상부층과 하부층 전자식스위치 사양, 수량이 다르게 설치됩니다.</p> <p>복층형 세대는 복층으로 2대의 보일러 및 전열교환기가 제공되며, 하나의 세대이므로 개별 분리 운전은 불가합니다.</p> <p>185㎡, 205㎡ 타입은 2대의 보일러가 제공되며, 하나의 세대이므로 개별 분리 운전은 불가합니다.</p> <p>185㎡, 205㎡ 타입은 현관창고에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구동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유수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거실 건축화 조명이 적용되는 유상옵션을 선택하거나 혹은 185㎡ 타입, 205㎡ 타입의 경우 가구장(신발장 상부)에 SMPS(건축화 조명 전원 박스)함이 설치되어 수납이 불가능합니다.</p> <p>스튜디오 테라스 타입 등 기준층과 PD 위치가 다른 경우 스튜디오 테라스 타입 하부층 세대 천정 내부에 위생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p> <p>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건본주택	<p>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84㎡C에 설치된 전자식 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p> <p>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84㎡C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조명이 설치됩니다.</p> <p>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125㎡A 거실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조명이 설치됩니다.</p> <p>건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홈페이지 외부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홈페이지에 표현되는 건본주택 설치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p> <p>건본주택이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자재는 유상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마감자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84㎡C 타입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p>

■ 실외소음도 예측 측정기관 및 예측결과(준공 후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측정기관				교통소음원			측정결과		
(주)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대표이사 김학건				상무대로. 40m도로. 왕복9차선. 아스팔트 포장 상무민주로. 25-28m도로. 왕복6차선. 아스팔트 포장 상무오월로. 15m도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 상무대로 911번길. 13-14.5m도로. 왕복2-3차선. 아스팔트 포장			실외소음도는 5층 이하 및 6층 이상 위치에서 기준 「실외소음도 65dB(A)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구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6층 이상 실외소음도		
				1층	5층	평가	최고층	소음도	평가
101동	1지점	전면	주간	46.6	49.6	기준이내	15	53.0	기준이내
			야간	42.1	45.1	기준이내	15	48.5	기준이내
		후면	주간	52.4	56.6	기준이내	15	56.1	기준이내
			야간	47.9	52.1	기준이내	15	51.7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46.1	48.6	기준이내	18	52.8	기준이내
			야간	41.6	44.2	기준이내	18	48.3	기준이내
		후면	주간	48.8	53.0	기준이내	18	54.9	기준이내
			야간	44.4	48.6	기준이내	18	50.4	기준이내
102동	1지점	전면	주간	50.5	52.8	기준이내	16	57.2	기준이내
			야간	46.0	48.4	기준이내	16	52.8	기준이내
		후면	주간	49.2	52.7	기준이내	16	55.4	기준이내
			야간	44.8	48.3	기준이내	16	50.9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49.9	51.3	기준이내	16	56.9	기준이내
			야간	45.5	46.8	기준이내	16	52.5	기준이내
		후면	주간	46.7	50.2	기준이내	16	53.2	기준이내
			야간	42.2	45.7	기준이내	16	48.7	기준이내
103동	1지점	전면	주간	55.3	58.0	기준이내	13	59.9	기준이내
			야간	50.9	53.5	기준이내	13	55.4	기준이내

	3지점	후면	주간	51.9	54.7	기준이내	13	57.2	기준이내
			야간	47.5	50.3	기준이내	13	52.7	기준이내
		전면	주간	54.6	56.1	기준이내	13	59.5	기준이내
			야간	50.2	51.7	기준이내	13	55.1	기준이내
		후면	주간	48.7	50.9	기준이내	13	53.5	기준이내
			야간	44.3	46.4	기준이내	13	49.1	기준이내
104동	1지점	전면	주간	55.6	56.8	기준이내	13	60.2	기준이내
			야간	51.2	52.4	기준이내	13	55.8	기준이내
		후면	주간	44.8	47.5	기준이내	13	51.1	기준이내
			야간	40.4	43.0	기준이내	13	46.6	기준이내
	2지점	전면	주간	56.1	57.8	기준이내	13	61.5	기준이내
			야간	51.7	53.3	기준이내	13	57.0	기준이내
		후면	주간	43.8	46.5	기준이내	13	50.0	기준이내
			야간	39.4	42.1	기준이내	13	45.6	기준이내
105동	1지점	전면	주간	56.8	60.7	기준이내	17	64.2	기준이내
			야간	52.4	56.2	기준이내	17	59.8	기준이내
		후면	주간	45.1	50.1	기준이내	17	54.5	기준이내
			야간	40.6	45.6	기준이내	17	50.1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58.9	62.7	기준이내	14	64.7	기준이내
			야간	54.5	58.2	기준이내	14	60.3	기준이내
		후면	주간	44.2	51.4	기준이내	14	54.7	기준이내
			야간	39.8	46.9	기준이내	14	50.2	기준이내
106동	1지점	전면	주간	48.6	51.3	기준이내	30	58.6	기준이내
			야간	44.1	46.8	기준이내	30	54.2	기준이내
		후면	주간	46.5	49.4	기준이내	30	57.3	기준이내
			야간	42.0	44.9	기준이내	30	52.9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53.4	55.9	기준이내	30	62.6	기준이내

		측면	야간	49.0	51.5	기준이내	30	58.2	기준이내
			주간	48.2	50.1	기준이내	30	61.2	기준이내
			야간	43.8	45.6	기준이내	30	56.8	기준이내
107동	1지점	전면	주간	55.5	56.9	기준이내	18	60.3	기준이내
			야간	51.0	52.4	기준이내	18	55.9	기준이내
		측면	주간	45.3	48.0	기준이내	18	53.2	기준이내
			야간	40.9	43.5	기준이내	18	48.7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56.6	58.6	기준이내	18	61.9	기준이내
			야간	52.1	54.1	기준이내	18	57.5	기준이내
		후면	주간	46.4	50.7	기준이내	18	55.0	기준이내
			야간	41.8	46.0	기준이내	18	50.3	기준이내
108동	1지점	전면	주간	44.8	46.8	기준이내	29	54.1	기준이내
			야간	40.3	42.4	기준이내	29	49.6	기준이내
		후면	주간	44.5	45.7	기준이내	29	53.4	기준이내
			야간	40.0	41.2	기준이내	29	49.0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47.1	50.3	기준이내	30	55.4	기준이내
			야간	42.6	45.8	기준이내	30	51.0	기준이내
		측면	주간	43.7	48.7	기준이내	30	59.1	기준이내
			야간	39.1	44.0	기준이내	30	54.6	기준이내
109동	1지점	전면	주간	46.4	50.0	기준이내	18	54.3	기준이내
			야간	41.8	45.4	기준이내	18	49.7	기준이내
		측면	주간	43.8	46.0	기준이내	18	49.9	기준이내
			야간	39.3	41.5	기준이내	18	45.4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50.0	54.0	기준이내	18	57.9	기준이내
			야간	45.4	49.3	기준이내	18	53.2	기준이내
		후면	주간	48.9	53.6	기준이내	18	54.8	기준이내
			야간	44.2	48.8	기준이내	18	50.0	기준이내

110동	1지점	전면	주간	46.0	49.6	기준이내	30	55.7	기준이내
			야간	41.5	45.1	기준이내	30	51.3	기준이내
		후면	주간	46.6	48.5	기준이내	30	52.9	기준이내
			야간	41.9	43.9	기준이내	30	48.3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44.7	47.7	기준이내	30	53.2	기준이내
			야간	40.2	43.1	기준이내	30	48.7	기준이내
측면		주간	43.2	45.4	기준이내	30	53.1	기준이내	
		야간	38.5	40.8	기준이내	30	48.5	기준이내	
111동	1지점	전면	주간	43.8	47.4	기준이내	21	54.5	기준이내
			야간	39.2	42.9	기준이내	21	50.0	기준이내
		후면	주간	47.5	48.5	기준이내	21	53.6	기준이내
			야간	42.8	43.8	기준이내	21	49.0	기준이내
	2지점	전면	주간	44.0	46.4	기준이내	21	52.6	기준이내
			야간	39.4	41.8	기준이내	21	48.1	기준이내
		후면	주간	46.5	48.8	기준이내	21	52.8	기준이내
			야간	41.8	44.1	기준이내	21	48.2	기준이내
112동 (전면)	1지점	전면	주간	46.4	50.6	기준이내	10	53.2	기준이내
			야간	41.7	45.8	기준이내	10	48.5	기준이내
		측면	주간	43.6	45.0	기준이내	10	45.6	기준이내
			야간	39.0	40.4	기준이내	10	41.1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주간	52.8	58.3	기준이내	11	58.0	기준이내
			야간	48.1	53.5	기준이내	11	53.2	기준이내
		후면	주간	61.2	62.1	기준이내	11	59.6	기준이내
			야간	56.4	57.3	기준이내	11	54.9	기준이내
113동	1지점	전면	주간	51.1	54.3	기준이내	10	55.1	기준이내
			야간	46.3	49.6	기준이내	10	50.4	기준이내
		측면	주간	45.6	46.9	기준이내	10	47.7	기준이내

	3지점	전면	야간	40.9	42.2	기준이내	10	43.0	기준이내
			주간	57.8	59.8	기준이내	13	58.3	기준이내
		후면	야간	53.0	55.1	기준이내	13	53.5	기준이내
			주간	60.4	61.0	기준이내	13	58.2	기준이내
114동	1지점	전면	주간	53.0	56.0	기준이내	15	55.8	기준이내
			야간	48.3	51.3	기준이내	15	51.1	기준이내
		후면	주간	52.9	57.4	기준이내	15	57.2	기준이내
			야간	48.0	52.6	기준이내	15	52.4	기준이내
	2지점	전면	주간	55.1	60.9	기준이내	15	58.1	기준이내
			야간	50.4	56.1	기준이내	15	53.3	기준이내
		후면	주간	53.3	61.1	기준이내	15	59.0	기준이내
			야간	48.5	56.3	기준이내	15	54.2	기준이내

※ 위의 실외소음도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의해 예측된 값이며, 준공 후 실측시 다를 수 있음

■ 일조예측 측정기관 및 측정결과

측정기관			일조 분석지점			
주식회사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대표이사 김학건			분석대상 건축물 각 세대의 주 채광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창문의 중앙지점			
구분	총 세대 수	수인한도	만족 세대 수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 수	만족율(%)
101동	62	38	24	61.29		
102동	64	51	13	79.69		
103동	52	52	0	100.00		
104동	26	26	0	100.00		
105동	62	62	0	100.00		
106동	120	103	17	85.83		
107동	72	72	0	100.00		
108동	116	86	30	74.14		
109동	71	52	19	73.24		
110동	120	69	51	57.50		
111동	42	32	10	76.19		
112동	32	23	9	71.88		
113동	34	33	1	97.06		

114동	30	29	1	96.67
합계	903	728	175	80.62

- 본 분석을 위해 분석프로그램인 Sanalyst V4.0를 사용하여 일조환경을 평가하였음.
- 일조 수인한도 기준인, 동지일 기준 09시-15시까지 범위에서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는지 또는 08시-16시까지 범위에서 합계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일조환경을 분석하였음.
- 본 보고서에 적용된 건물 데이터의 층고 및 좌표값은 설계도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하여 입력하였음.
- 단지 내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전체 903세대 중 728세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80.62%가 가조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제8조)	적 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제9조)	적 용	-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제13조)	적 용	- 거실, 침실, 주방 등에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일괄소등스위치 (제14조)	적 용	- 해당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60㎡ 이상) - 시대 내 1개소 (전기용품 안정이증을 득한 제품)
고효율조명기구 (제15조 제1호)	적 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열스위치 (제15조 제2호)	적 용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열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제16조)	적 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 각 실 1개소 적용
절수설비 (제17조)	적 용	- 수도법 15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절수설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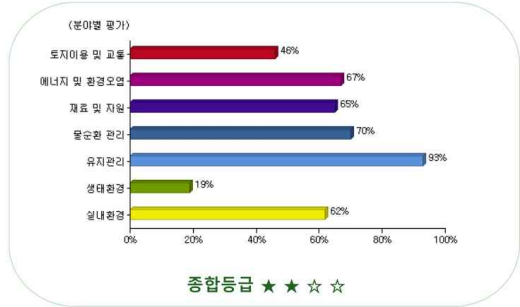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남대학교 상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3-0468-5
건축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4.08.31.	유효기간 : 2023.04.27. ~ 사용승인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층수 : 지하3층, 지상30층	인증 등급
연면적 : 193,862.6666㎡ (평가 연면적: 189,784.0728㎡)	인증 등급 : 우형(그린3등급)
건축용도 : 공동주택	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 에이엠에디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주) (주)다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기준 : 한국건축물등급제도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호남대학교 상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 신청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 성능등급

카. 소음 관련 등급	성능등급	등급(개선)
1. 생활소음측정 조건상	★★★★	★★★★
2. 주말주말 낮시간대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4. 교통소음도로·철도·선대역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5. 화상실내공기 소음	★★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등급	등급(개선)
1. 내구성	★★★★	★★★★
2. 가연성	★★★	★★★
3. 수리용이성 적용부분	★	★
4. 수리용이성 적용부분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등급	등급(개선)
1. 기온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2. 과도한 지하채광 시설	-	-
3. 토양사 함도·상토양(해당기·농경지용 관영) 최소화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5. 에너지 성능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중계	★	★
7. 설계생애주기 비용	★	★
8. 제진소 제진방안 기술의 적용	★★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
10. 환경친화적인 제품(EPP)의 사용	★★	★★
11. 적탄소 자재의 사용	★★★★	★★★★
12. 자력순환 자재의 사용	★★★★	★★★★
13. 재활용성 자재의 사용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
16. 빗물관리	★★	★★
17. 빗물 및 유출저수 이용	★★★★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등급	등급(개선)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3. 차원기차량 및 차전거도로의 적함성	★★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
5.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쾌화	★★★★	★★★★
6. 중앙유지관리 방식 및 대응인 제형	★★★★	★★★★
7. 주차장 배율률 준수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13. 중대트위크 및 스마드룸	★	★
14. 명반인원 권역스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등급	등급(개선)
1. 화재 및 경보설비	★	★
2. 제연설비	★	★
3. 내화설비	★	★
4. 주택피난로	★★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
6. 피난설비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한국부동산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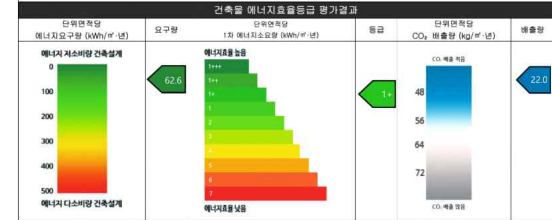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시지)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남대학교 상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3-주-에-11-0067
준공연도 : 20240831	평가자 : 이현지
층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주 수 : 지하3층 / 지상30층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93862.6666㎡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계자 : (주)다인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 1+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도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m²·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4.5	47.0	36.3	9.8
급탕	30.7	34.2	25.3	7.0
조명	7.4	7.4	20.4	3.5
환기		3.6	9.8	1.7
합계	62.6	92.2	91.8	22.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제치,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한국부동산원장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변경 될 수 있음)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정보통신 감리	소방 감리	구조 감리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	(주)한국안전원
감리금액(단위:원)	3,681,548,000(VAT별도)	702,495,427(VAT포함)	173,580,000(VAT포함)	308,220,000(VAT포함)	127,050,000(VAT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상무 센트럴자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3-101-0001900 호	847,987,0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임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임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①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에스시아이,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사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서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시행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시아이에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시아이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시아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시아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시아이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공급계약상 내용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정보

구 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지에스건설(주)	(주)에스시아이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002694	200111-047840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18, 4층(궁동)

☐ 홈페이지 주소 : <https://xi.co.kr/SC>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 분양문의 1544-471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견본주택 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